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 금지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2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 금지 ····· 3

2.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일체의 제출의무 부과 ····· 9

3.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하는 선거여론조사 신고 의무화 ····· 13

4.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시 가상번호 사용의무 부과 ····· 18

[참고]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16.6.) ····· 26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아닌

임의적인 표본을 사용하고, 조사시간·가중값 조정 등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결과를 조작·왜곡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등).

Ⅲ. 검토의견

1.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 금지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1]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 3. (생 략)[2] <신 설> <신 설>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3호 또는 제4호----------. 1. ~ 3. (현행과 같음) 4. 제6항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⑥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된 광고 2. 다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3.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하여 얻을 수 있는 특정 정보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유형의 부당한 광고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 유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생 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자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1)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법 제8조의9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동조 제5항전단).

《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

구분(§8의9⑤)	등록취소사유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2호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호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법 제8조의9제5항후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제도(법 제8조의9)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3]

그런데,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한 상황이며,[4] 일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선거여론조사와 함께 이미지 컨설팅부터 선거 전략 수립을 패키지 형태로 제안하거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며 영업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있음.[5]

이러한 형태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개입하며 조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6]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05179호) 제안이유 중
" 각종 공직선거에서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형성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는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생략)"

4) 미디어펜(2024.1.9.),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신뢰도 문제 없나"
부산일보(2023.8.17.), "공정, 객관성 상실한 여론조사"

5) 동아일보(2024.2.9.), "공천 여론조사 업체가...선거컨설팅 총선장사"
더팩트(2024.5.2.), "000의원실, 총선 기간 불법적 여론조사 의심업체 수사요청"

6) 가령, 설문항목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을 포함하거나, 늑정 계층의 응답 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거짓·과장된 광고, 법을 위반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 및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거짓·과장된 광고 등 부당한 광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제재기준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7] 광고물의 경우 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되므로[8] 개정안에 의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벗어나진 않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9]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

7) [헌법재판소 2002.1.31.선고 2000헌가8]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구성요건이 추상적 또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제재의 폭이 지나치게 넓게 되는 경우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8) [헌법재판소 2014.3.27.선고 2012헌바293]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되므로(헌재2002. 12. 18. 2000헌마76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9) [헌법재판소 2014.4.24.선고 2011헌바17등]
"헌법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하면 될 것이다."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광고는 사적 경제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규제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에 침익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일체의 제출의무 부과

개정안은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일체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⑤ (생 략)[10] ⑥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 ·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調査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u>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u>. ⑦ ~ ⑭ (생 략))[11]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u>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⑦ ~ ⑭ (생 략)

10)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

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호 생략)

11)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일체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자료일체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여론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일체를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행법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게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법 제108조제9항)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도입할 경우 원자료 등록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예산·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하는 선거여론조사 신고 의무화

개정안은 현재 별다른 등록 의무가 없는 공표·보도하지 아니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표본추출·결과분석 등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⑬ (생 략) <신 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⑬ (생 략) 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보도하지 아니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설계서·표본추출·결과분석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⑭ (생 략)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5.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4항을 위반하여 공표·보도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08조제6항),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08조제7항).[12)]

1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 및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13]

최근 불법 여론조사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의 경우에도 다수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및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14]

이에 개정안은 현재 별다른 등록 의무가 없는 공표·보도하지 아니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표본추출·결과분석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내부 참고용 목적의 공표·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에도 결과분석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15]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지도록[16]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와 비교하여[17] 적정 신고기준을 마련

---

13) 공감신문(2024.10.30.), “비공표 여론조사 논란...투명성 확보 방안 모색”
연합뉴스(2024.10.29.), “여심위, 비공표 여론조사 관리 사각지대...신고 의무화 필요”

14) 굿모닝충청(2024.11.21.), “미래한국연구소 미등록 업체였다...분석 인원도 0명”
시사IN(2024.11.12.), “비공표 보고서 23건, 누굴 위한 여론조사였나”

15) “여론조사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이를 공급하려는 여론조사자나 언론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노홍,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홍익법학(2019), p.243.

16) 헌법재판소는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만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상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구간은 적게는 1백만원 이하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액수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그 정도가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함.[18]

시한 바 있음.(헌재 2015.4.30.선고 2014헌마360)

17)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12조(등록사항) ①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1. 접촉률
12. 응답률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4. 표본오차
15. 전체 질문지
16.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17.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18) [헌법재판소 1998.5.28.선고 96헌바83]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

《 현행법상 과태료 구간별 의무위반사항(법 제261조) 》

구분		의무위반사항(예시)
제1항	5천만원 이하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거나 이해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제2항	3천만원 이하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선거여론조사기준 함께 공표·보도 아니한 자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선거여론조사기준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3항	**1천만원 이하**	·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제4항	5백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의 설치 관련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6항	3백만원 이하	·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항	2백만원 이하	· 선거에 관해 현행법이 규정하는 신고, 제출 의무를 해태한 경우
제8항	1백만원 이하	· 여론조사 기관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도입할 경우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와는 별도로 보다 완화된 신고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은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4.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시 가상번호 사용의무 부과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현행 재량조항(사용할 수 있다)에서 의무조항(사용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1. ~ 5.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② ~ ⑤ (생 략)

선거여론조사는 크게 조사방법에 따라 전화조사와 ARS조사로 나눌 수 있고,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RDD(Random Digital Dialing)방식과 가상번호를 통한 표본추출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19]

전화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통해 읽어주는 질문항목을 듣고 응답하는 방식이며, ARS조사는 기계음에 의해서 질문항목을 듣고 응답자가 응답하는 조사방식임.[20]

한편, RDD(Random Digital Dialing)방식은 유선번호 또는 무선번호를 무작위로 발생시켜서 기계가 전화를 걸고 (결번이 아닌) 유효한 번호이면 조사를 시도하는 방식임. 다만, 이 방식은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무작위로 번

19) 이하의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 내용을 주로 참고함.
통계교육원, "여론조사 결과는 왜 각각 다를까"
(https://sti.kostat.go.kr/window/2024a/main/2024_sum_01.html)

20) 두 조사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응답률이며 응답률은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 문제와 직결됨. 예를 들어, ARS조사의 경우 정치여론조사의 평균 응답률이 2~4% 정도이며, 전화조사의 경우 평균 응답률이 10~20%로 나타남. 결국, ARS조사는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 응답할 가능성과 이에 따라 조사결과가 모집단의 현상과 다소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전화조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제기됨.

호를 추출하는 RDD방식의 경우 전국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구성의 할당량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와 같은 RDD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휴대전화 가상번호인데 지역별, 성별, 연령별 휴대폰 번호를 통신사에서 제공받아 조사를 진행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휴대폰 번호가 아닌 "050(1)-xxxx-xxxx" 형태의 가상번호가 제공됨.[21]

이러한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010 형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 번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낮고,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성별, 연령대, 주소정보를 바탕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로 구분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집전화에 의존하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주도로 선거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였고, 조사기관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받아 선거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22]

---

21)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면 지정된 기간에만 가상번호와 이어진 실제 휴대폰 번호로 연결됨. 여론조사 업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통신사는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성별, 연령대에 맞게 가상번호를 넘기고 개당 16.76원(하루 사용 기준)을 수수료로 받음.
중앙일보(2024.10.5.), "끝없는 여론조사 전화...통신3사, 가상번호 넘기고 43억 벌었다"

22) 곽은선·김영원, "현행 선거여론조사 방법의 정확성과 선거결과 예측 가능성", 조사연구 23권1호(2022.2.) p.132.

우리나라의 시내·이동전화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시내전화 가입자수(유선 시내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유선전화 이용하는 가입회선)는 2000년 2,193만 회선에서 2002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기준 1,097만 회선으로 감소하였고, 이동전화(휴대전화) 가입자수(무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회선)는 2000년 2,681만 회선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8,389만 회선으로 증가하였음.

《시내·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단위: 천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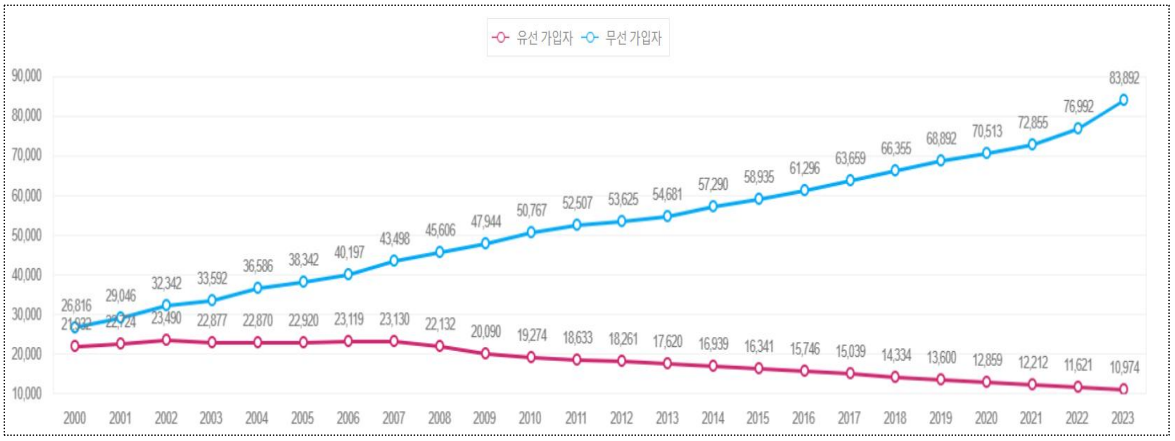

※ 자료: e-나라지표(시내/이동전화 가입자)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5#)

이처럼 오늘날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유선전화보다는 휴대전화가, RDD방식보다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바,[23]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3) "2017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비교해 본 결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전화조사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화여론조사의 정확성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화여론조사에 비해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곽은선·김영원, "현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24]

이에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현행 재량조항(사용할 수 있다)에서 의무조항(사용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다른 방식에 비해 더 들게 되며,[25]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걸기(RDD)를 활용한 조사와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 간 예측정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26]도 존재함.

또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에 알뜰폰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음.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

행 선거여론조사 방법의 정확성과 선거결과 예측 가능성", 조사연구 23권1호(2022.2.) p.149.
다만, 위 논문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2016년 국회의원선거는 집전화 중심의 전화여론조사가 수행되었고, 2020년 국회의원선거는 휴대전화만을 사용하거나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가상번호 사용에 따른 효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존재함. 정성일, "20대 대통령선거 전화여론조사 정확성 분석", 고려대학교 학위논문(석사), p.5.

24) 2016년 6월 23일 제출 공직선거법 등 개정의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의안번호 ZZ20008호 참고자료 참조

25) 가상번호 단가는 20일간 사용되는 가상번호의 경우 202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비용이 1개당 335원인데, 만약 1천명 표본으로 가상번호 전화 여론조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최소 20~30배수 가량의 가상번호 표본 구성을 하게 되므로, 조사원 인건비와 전화요금을 제외하고라도 가상번호 구입 비용만으로 이미 회당 최소 670~1,005만원 가량이 소요됨. 또한, 가상번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 제108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 1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함.

26) 정성일, "20대 대통령선거 전화여론조사 정확성 분석", 고려대학교 학위논문(석사), p.37.

Operatior)은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무선통신서비스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27]

이러한 알뜰폰 사업자는 현행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알뜰폰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28]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최초 도입 후 10여년이 지난 2022년 12월 현재 MVNO 서비스의 전체 가입자 수가 1,200만 회선을 넘어섰으며, 사물지능통신[30] 등 기타 가입자를 제외하고 순수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 수 또한 700만 회선을 넘어섰음.

---

27) 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2010.3.22. 전부개정, 2010.9.23. 시행)

28) 알뜰폰은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취약 계층, 젊은 층(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층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계층의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배제되면 특정 계층(고소득층, 유선전화 사용자)의 의견이 과대대표될 우려가 있음.

29) 제21대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알뜰폰)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의안번호 제2114816호, 제2121799호. 2025.2.8. 기준 제22대국회 개정안은 없는 상황임.

30) 사물지능통신은 통신·방송·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을 통해 정보를 지능적으로 수입, 가공, 처리하여 상호 전달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MVNO 휴대폰, IOT별 회선 수 현황》

(단위: 회선)

구 분		2019.12월	2020.12월	2021.12월	2022.12월
휴대폰	선불	3,558,041	2,657,319	1,607,143	1,587,461
	후불	3,312,188	3,448,198	4,485,699	5,684,939
가입자기반 단말장치 및 사물지능통신		879,287	3,005,768	4,262,235	5,556,847
합계		7,749,516	9,111,285	10,355,077	12,829,247

※ 자료: e-나라지표 주요정책자료 중 가장 최근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2023.5.4. 등록)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5#)

따라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한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지 여부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필요성과 조사 비용 증가에 따른 여론조사기관의 부담, 여론조사 표본추출방법에 대한 기관의 자율성[31] 존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32]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761호, 박정훈의원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

---

31) 최근 여론조사기관들은 전체 유무선 비율에서 무선비율 100%로 무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조사를 많이 실시하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정당 지지도 등)는 비용 등을 감안해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한 경우가 많음. 최근 여론조사 실시현황과 그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list.do?menuNo=200467)

32)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시 가상번호 사용의무 부과,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일체의 제출의무 부과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환경의 변화로 휴대전화의 사용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선거여론조사에서 적정 유·무선 혼합비율에 대한 학계의 확립된 견해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점,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33]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33) 통신3사 제공거부 신청건수: 20년 약 6천건, 22년 약 100만건, 24년 기준 약 194만건

참고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16.6.)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 확보

1. 공표 · 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57의8, §108)

현 행

정당의 당내경선과 정당활동에 관한 여론조사에 한하여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음(§57의8).

개정의견

○ 현행 '안심번호'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도록 함.

○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

○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함.

○ 이동전화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수신거부조치 및 부정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는 당내경선에서의 안심번호 활용 규정을 준용함.

제 안 이 유

○ 현행「공직선거법」에서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하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도록 함.